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7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이종배・김소희・권영진

이양수 · 이성권 · 이종욱

김용태 · 김성원 · 박덕흠

신동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도서・벽지 교육진흥법」 및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・벽지 및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위 법률들은 도서·벽지 및 농어촌만을 교원 주거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.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구분이 모호하여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. 그럼에도 위 법 률에서 농촌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서 근무하는 교원이지만 같은 행정구역에서도 도시지역 학교에 근무 하는 교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.

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농복합

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60조의12 신설).

법률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의2에 제60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0조의12(도농 복합형태의 시 교원에 대한 주거 지원) ① 교육부장 관과 교육감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의 방법,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0조의12(도농 복합형태의 시
	교원에 대한 주거 지원) ① 교
	육부장관과 교육감은 「지방자
	치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
	<u>농</u> 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
	교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
	여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
	<u>할 수 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의
	방법,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